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임태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03 발의년월일 : 2019.10. 2.

발의의원:임태상의원

강성화 의원

박우근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1. 제안이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 FOR YOU 운동'(대구포유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구포유운동과 시민추진단에 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역할에 관해 규정함(안 제 4조에서 제7조)
- 다.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 8조에서 제12조)
- 라.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홍보단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관련 운영예산 편성필요(해당부서와 합의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대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대구 FOR YOU 운동'을 추진하는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구 FOR YOU 운동"(이하 "대구포유운동"이라 한다)이란 대구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선진문화형성 운동을 말한다.
- 2.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포유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시민추진단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대구포유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하다)을 구성한다.
- ②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민추진단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별 시민추진단 지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등) ① 시민추진단은 대구포유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대구포유운동 실천 및 활성화
 - 2. 각종 행사 등에서의 대구포유운동 손님맞이 운동 전개
 - 3.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민간 기관·단체 및 업체·업소 등에 대한 대구포유 운동 참여 권면
 - 4. 그 밖에 대구포유운동과 관련한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
- ② 시민추진단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추진단의 임기) 시민추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수 있다.
- 제7조(시민추진단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추진단워(이하 "단워"이라 한다)을 해촉 할 수 있다.
 -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 3.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8조(임원 등)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사무국장 1명
 - 4. 구·군별 지회장 및 총무 각 1명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구·군 지회장 중에 호선하며, 구·군 지회장은 구·군 소속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④ 각 구·군 총무는 해당 지회장이 지명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시민추진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시민추진단을 운영한다.
- ④ 구·군 지회장은 구·군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운영 하며, 총무는 구·군 지회장을 보좌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제7조 각 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임원 회의) ① 임원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 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홍보단 구성 등) ① 대구포유운동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 단에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다.
- ②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4조(활동지원) 시장은 대구포유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대구포유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 청결, 친절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과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 2. 안전, 청결, 친절 등 대구포유운동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홍보물 등 물품 보급
 - 3. 그 밖에 대구포유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시민추진단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국내·외 연수를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